

● 제305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2. 2. 7.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I. 조례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김정태 의원 외 19명
- 나. 제안일 : 2022. 1. 19.
- 다. 회부일 : 2022. 1. 25.
- 라. 의안번호 : 303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회의 경우 추계요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의안 접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의원 또는 위원회가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의안비용추계 의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되, 의원 또는 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의회의규칙」에 따라 위원회 심사 전까지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3조제5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 없음.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본 개정안은 의원 또는 위원회가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할 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비용추계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의안비용추계 의뢰서를 첨부해 의안 접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됨.

2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등(안 제3조제5항 신설)

- 현행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는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제출할 경우 비용추계서 첨부을 의무화하고 있음(제3조제1항).
- 이러한 의무 조항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 또는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특히 위원회에서 수정한 의안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용추계서 첨부의 생략을 규정하고 있음(제3조제1항 ~ 제3항).
- 개정안은 의원 또는 위원회가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 시 비용추계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비용추계 의뢰서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하되, 위원회 심사 전까지 의원과 위원회는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3조제5항).

- 개정안과 같이 비용추계 의뢰서를 첨부함으로써 의안의 접수가 가능해질 경우 비용추계 처리기간¹⁾을 감안했을 때 비용추계서 제출을 의무화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의안제출 지연 등의 문제점은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위원회가 제안하는 의안에 대해서도 위원회 심사 전까지 비용추계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시 소요예산 등을 사전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수정제안과 위원회 제안 의안의 경우 제안과 심사 사이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현실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비용추계의 생략 규정이 '20년에 신설²⁾된 점을 감안했을 때, 위원회 심사 전까지 위원회 제안 의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강행하는 개정안은 실효성이 크지 않음.
- 참고로 국회법은 의원은 물론 위원회가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용추계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위원회가 제안하는 의안의 경우 비용추계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만 비용추계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제79조의2제3항).

1) 「서울특별시의회 의안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비용추계 처리기간) ①의안비용추계 작성에 따른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사유서 : 14일 이내

2. 비대상사유서: 7일 이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 내용이 복잡하거나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의뢰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처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2) 참고로 위원회에서 수정한 의안과 제안하는 경우 비용추계서 첨부 없이 제출하는 관행이 반복되는 가운데, 의안 심사와 의결의 실효성과 적법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 조례 개정을 통해 비용추계를 생략하는 근거(조례 제3조제3항)를 신설한 바 있음.

3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비용추계 의뢰서를 첨부해 의안의 접수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의안처리시스템의 탄력성을 높이고, 의안제출 지연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비용추계제도의 취지를 감안했을 때 특히 위원회가 제안하는 의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를 심사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은 위원회 심사의 기초자료를 사전에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임.
- 다만, '20년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 제안의안과 수정안에 대해 비용추계서 첨부 없이 제안되는 현실적인 상황을 인정해 비용추계의 생략 규정을 신설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 위원회 심사 과정 중에 발생한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제출을 강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만약 개정안과 같이 비용추계서 제출 의무화를 강행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제출의 의무화를 우선적으로 규정하고, 비용추계서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을 이후에 규정하는 등 조항 간의 체계에 대한 수정·보완이 불가피하며 비용추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의결로 비용추계의 생략을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국회법」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5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전에 해당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의장과 비용추계를 요구한 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이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추계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정부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국회의원·위원회 또는 정부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거나 위원회에서 수정된 의안이 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수정한 의안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위원회는 의안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1. 상위법령 개정 및 기관(조직)변경에 따른 조례개정인 경우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단순한 자구 수정인 경우